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11. 3. 조경태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1. 11.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2.4.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3.7.5.)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3.11.22.)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7차 전체회의(2023.11.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조경태의원)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학습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룬 동시에 물질만능주의 풍조와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음.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신분을 나누는 풍자적·자조적 신조어가 등장하고, 종종 갑질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함. 이 이면에는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의식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존중의식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존중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시책마련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4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재유)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실시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 평생교육¹⁾ 등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²⁾으로 함.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경제적 성장을 이룬 탓에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신분을 나누는 풍자적·자조적 신조어가 등장하고, 이른바 ‘갑질³⁾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의식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교육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

1) 「교육기본법」 개정(2021. 9.24. 개정, 2022. 3.25. 시행)으로 “사회교육”이라는 용어가 “평생교육”으로 변경됨.

2) 「교육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갑질”이란 계약 권리상 쌍방을 뜻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에 특정 행동을 폄하하여 일컫는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신조어임. 국립국어원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으로 풀이

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4)에서는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인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5)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⑥ (생략)

⑦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시행일: 2022. 7. 1.] 제26조

및 대학의 장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목적⁶⁾으로 제정(2011. 3. 30.)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을 포함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국가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의 추진 등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⁷⁾에서는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기타 관련 조문은 【참고법률】 참조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 ④ (생략)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아울러,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8)에 따른 ‘안전교육’의 범주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도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 주제(안전·건강) 등을 통해 학교 실정에 맞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교과인 도덕, 사회, 생활과 윤리 등에서 인권 및 인간존엄성 교육,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등으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9).

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인권)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이 명시되어 있는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초·중등 학교에서 관련 법률 및 현행 교육과정에 따라 연간 6시간 이상10)의 생명존중 교육을 교과 및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학교급별 8시간~10시간, 학기당 2회 이상 교육

【별표 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 (초등) 내 몸의 소중함 알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 (중학교) 자살예방 및 스트레스 점검과 해소방법 알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 (고등학교)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 인식하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9) 일례로 ‘생명존중’에는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의 권리 등 삶[生]의 영역뿐 아니라 인공임신중절·자살·안락사·뇌사 등 죽음[死]의 영역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음. 붙임 【참고자료】

초·중등 교육과정의 관련 교과 내 ‘생명존중 교육’ 성취기준(예시) 참조

10) 교육부 지침인 “2021년 학생자살예방 대책”에 따르면, 연간 6시간의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실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에 국가 등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입법 필요성과 아울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존중문화”는 자살 예방에 일차적인 목적¹¹⁾을 두고 있는 반면에,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생명존중의식”은 본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생명존중, 나아가 동물을 비롯한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생명존중의식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됨.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 자료 】

1.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중 해당 영역

②인성교육, ④민주시민교육, ⑤인권교육, (5-1) 노동인권

2.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 중 '인권 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 내용(예시)

학교급	교과목	성취 기준 코드	교과내용요소
초 5·6	도덕	6도03-01	인권의 의미와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권 존중의 방법을 익힌다.
	사회	6사02-02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6사02-03	인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의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한다.
중	도덕	9도03-01	인간 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사회	9사(일사)06-02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방법을 조사한다.
고(공통)	통합사회	10통사04-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고(선택)	정치와 법	12정법05-02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탐구한다.
	사회문제 탐구	12사탐05-04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제도 및 기구(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를 탐구하고, 관련 직업에 대해 조사한다.

자료: 교육부

3.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예시)

학교급	교과목	성취 기준 코드	교과내용요소
중	기술·가정	9기가02-07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한다.
	보건	9보06-05	삶과 죽음의 의미, 생명의 소중함을 토론하고, 자살 예방 방안을 모색한다.
고(선택)	생활과 윤리	12생윤02-01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여러 윤리적 입장을 비교·분석하여, 인공임신중절·자살·안락사·뇌사의 문제를 자신이 채택한 윤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12생윤02-02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의 권리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자신의 관점을 윤리 이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자료: 교육부

【 참고 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2조의2(정의)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1. 15.>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 14. (생 략)

③ · ④ (생 략)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법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 ④ (생 략)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 ① (생 략)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영호)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명존중 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시책마련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부터 제17조의6까지를 각각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7까지로 하고,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생명존중의식 함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4</u>(건전한 성의식 함양) (생 략) <u>제17조의5</u>(안전사고 예방) (생 략) <u>제17조의6</u>(평화적 통일 지향) (생 략)	<u>제17조의4</u>(생명존중의식 함양)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 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 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u>제17조의5</u>(건전한 성의식 함양) (현행 제17조의4와 같음) <u>제17조의6</u>(안전사고 예방) (현행 제17조의5와 같음) <u>제17조의7</u>(평화적 통일 지향) (현 행 제17조의6과 같음)